

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(박성민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진할 수 있는 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에 “「국제개발협력기본법」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산업기술 분야 관련 사업”을 추가함(안 제27조제1항제7호 신설).

II. 검토의견

- 개정안에 대하여 체계와 자구를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.

(전문위원 박 동 찬)